

등록번호	복지지원과-17307
등록일자	2015.9.15.
결재일자	2015.9.15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맞춤지원팀장	복지지원과장	복지환경국장
노제인	김현성	조충현	09/15 유용렬
협 조			

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·해촉



복지환경국
복지지원과

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·해촉

우리구 지역사회보장 민·관협력 기구인 『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』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하고, 『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』 시행(2015.7)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위원을 위촉·충원하여 활성화 하고자 함.

I 관련 근거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
-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

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기능

- 구 성 : 40인 이내 (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)
- 위 촉 일 : 2013. 9. 9
- 임 기 : 2년

○ 「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제6조(위원의 임기)

“ 각 협의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”

기 능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
 -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
 - 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 - 3.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 - 4.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 - 5.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·해촉

임 기 : 2015. 9. 9 ~ 2017. 9. 8 (2년)

위원 현황

구분	기 존 (2015. 9. 8 기준)	현 원	비 고
대표협의체	21명	23명	+ 2
실무협의체	15명	16명	+ 1
총 인원	36명	39명	+ 3

※ 재위촉: 30명, 신규 위촉: 9명, 해촉: 6명

IV 향후 계획

- 재위촉 임기를 명시한 공문 발송 (재위촉 대상자)
- 각(대표, 실무) 협의체 회의 개최시 위촉

따로 붙임 : 1. 각(대표,실무) 협의체 위원 신규 위·해촉 대상자 명단 1부.
2. 각(대표,실무) 협의체 위원 명단 1부. 끝.